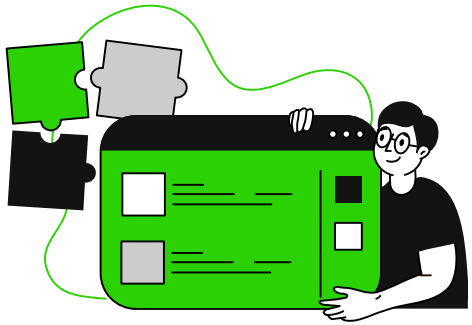

상생협력기금 활용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상생협력기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이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재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

활용사업

1 동반성장 투자재원 — 민간자율 추진사업	2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 R&D지원	3 성과 공유제 — 성과공유제 시행지원	4 협력이익 공유제 —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지원	5 산업혁신 운동 — 2,3차 협력사 컨설팅
6 상생형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7 혁신 파트너십 — 협력사 혁신활동 지원	8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해외 판로개척	9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 창업벤처등 민간자율추진사업	10 협력사CSR 평가지원 — CSR 진단,교육, 현장실사

2. 상생협력기금 출연절차 (1/4)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① (출연기업)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② (출연기업) 출연신청서 접수 및 전용 가상계좌 개설

③ (출연기업) 출연예정일에 기금출연(입금)

④ (협력재단) 입금확인 및 수입처리

⑤ (협력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행

[https://fund.win-win.or.kr]

Check

- 회원가입 후 **재단 담당자**가 **승인**하여야 세부페이지 이용 가능
- **전용 가상계좌**는 기업당 1개씩 발급되며, 해당 계좌로 **출연(입금)**
- **출연 사업 선택** 후 출연신청서 제출 (서면 스캔본 또는 전자서명)

2. 상생협력기금 출연절차 (2/4)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기금관리>출연신청

fund.win-win.or.kr

순번	기능 설명
1	출연신청 안내 관련 첨부문서를 확인함
2	유의사항을 확인
3	확인하였음을 체크함
4	출연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출연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

2. 상생협력기금 출연절차 (3/4) -전자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자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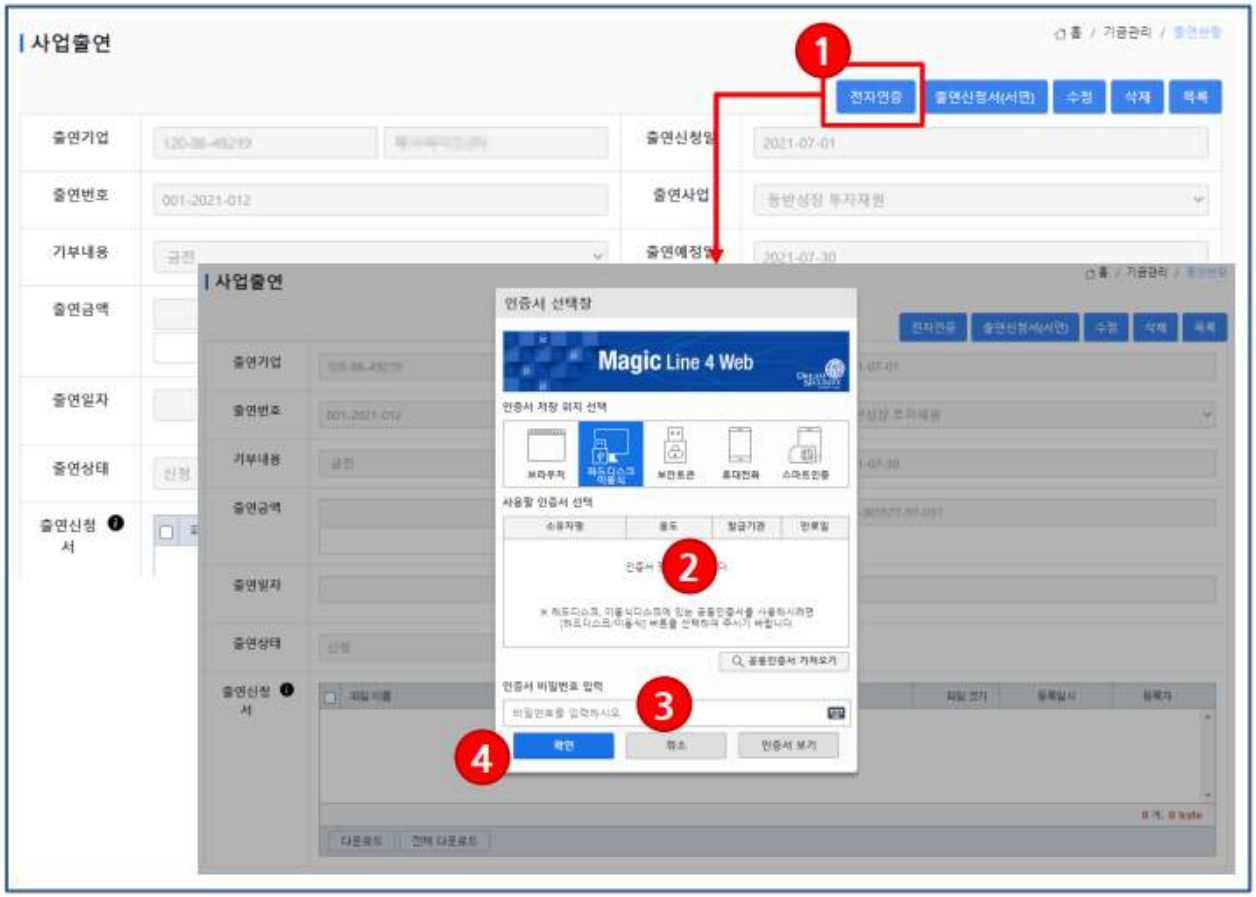

순번	기능 설명
1	출연기업은 전자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인증 수행
2	법인 공인인증서를 선택
3	법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4	확인 클릭하여 전자인증 완료
참고	. 출연신청 인증은 전자인증 또는 서면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전자인증으로 인증한 경우 출연신청서(서면)은 첨부하실 필요 없음.

2. 상생협력기금 출연절차 (3/4) -서면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면인증(1/2)

순번	기능 설명
1	등록한 출연신청정보를 지정된 '출연신청서'양식으로 리포트 생성
2	시스템(리포트 솔루션) 통하여 출연 신청서 다운로드 및 인쇄 기능 제공
3	PC로 '출연신청서'파일 다운로드 또는 인쇄

2. 상생협력기금 출연절차 (4/4) -서면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면인증(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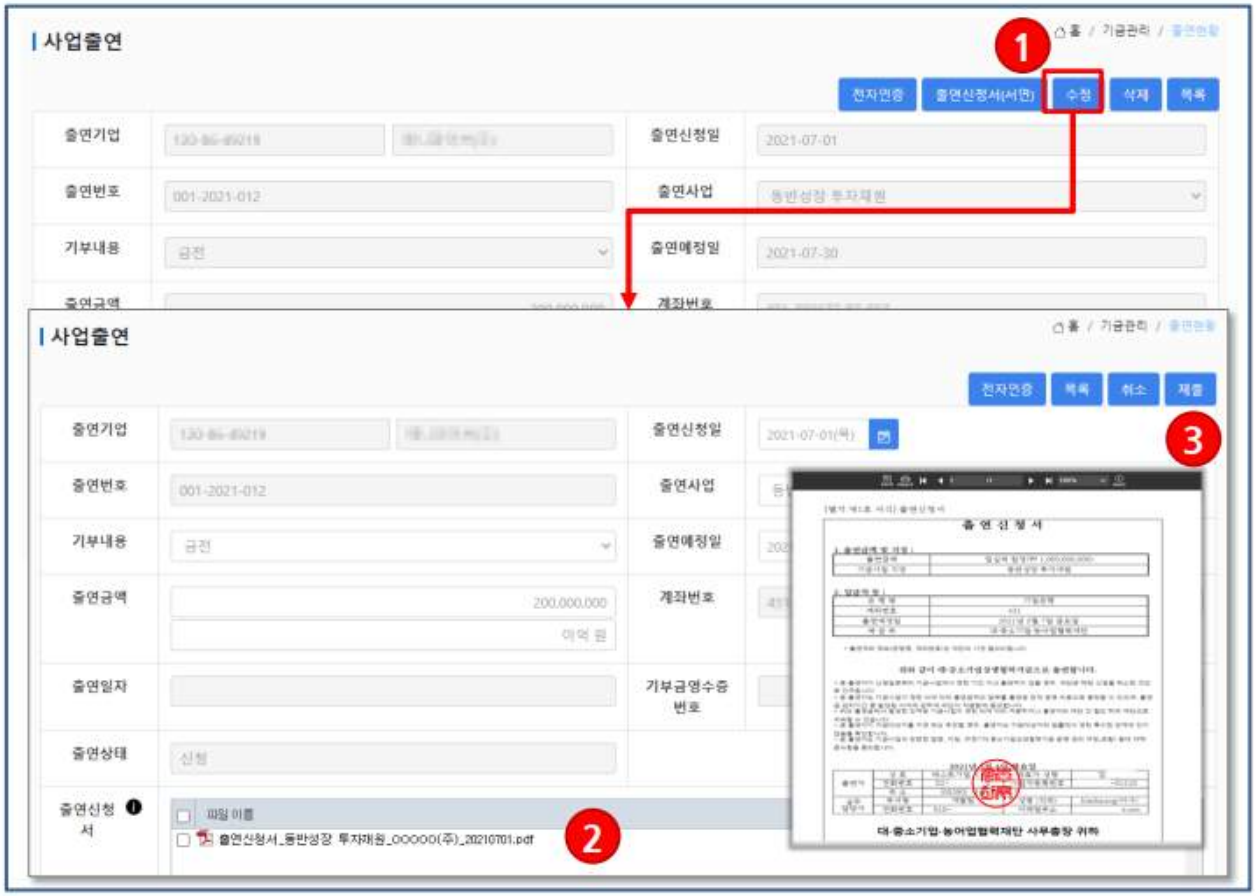

순번	기능 설명
1	직인 날인한 출연신청서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사업출연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
2	인쇄한 '출연신청서'에 직인을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출연신청서 첨부란에 업로드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파일을 Drag&Drop)
3	'제출' 버튼으로 출연신청건 정보 재단담당자에게 제출
참고	출연신청정보는 '수납완료' 상태 이전에는 수정가능 하며 '수납완료' 이후에는 수정불가함

※ 상생협력기금 출연현황 조회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기금관리>출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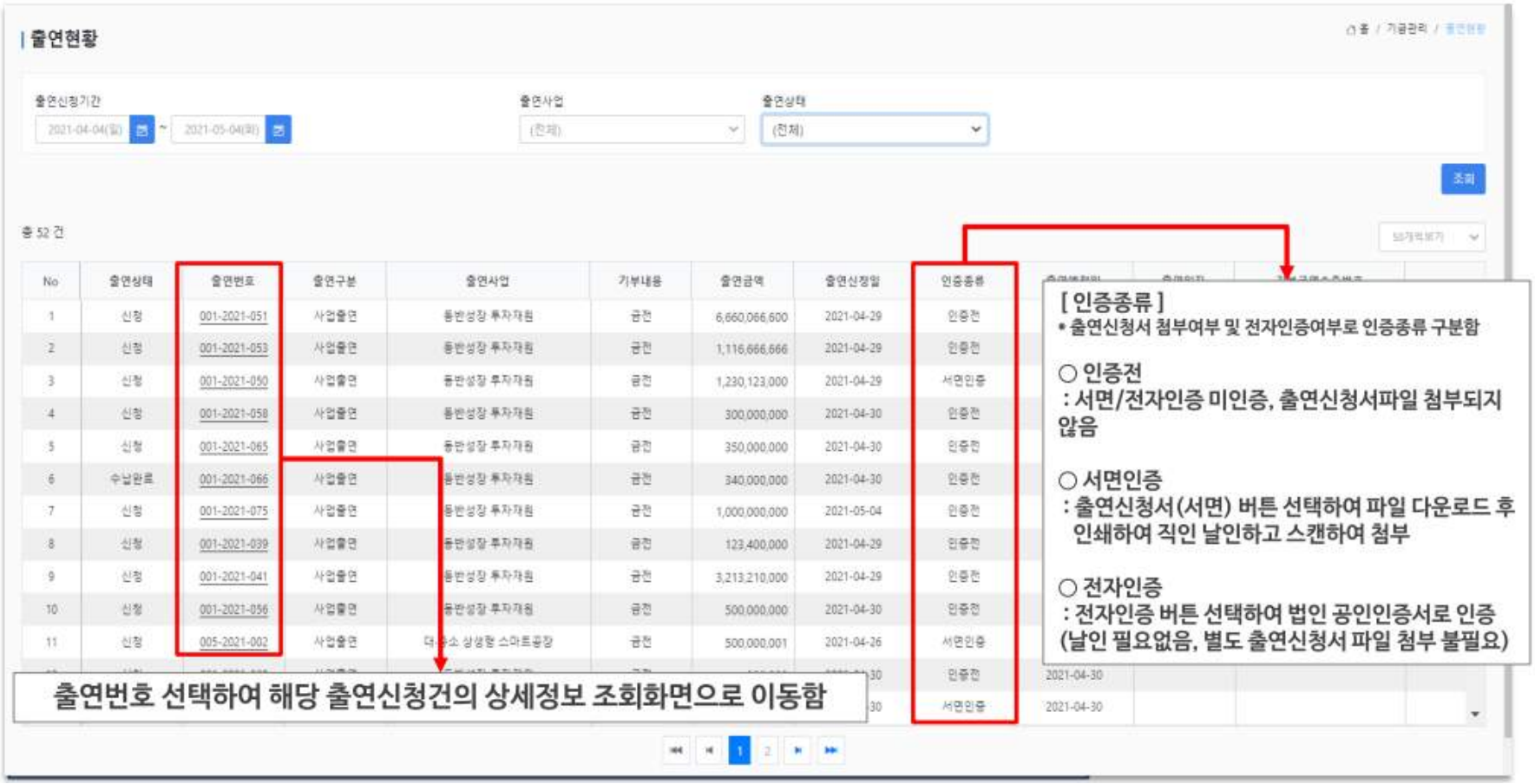

※ 상생협력기금 기부금영수증 출력방법 (1/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기금관리>출연현황

출연현황 목록에서 선택한 출연건의 상세화면 에서 '기부금영수증' 버튼 클릭하여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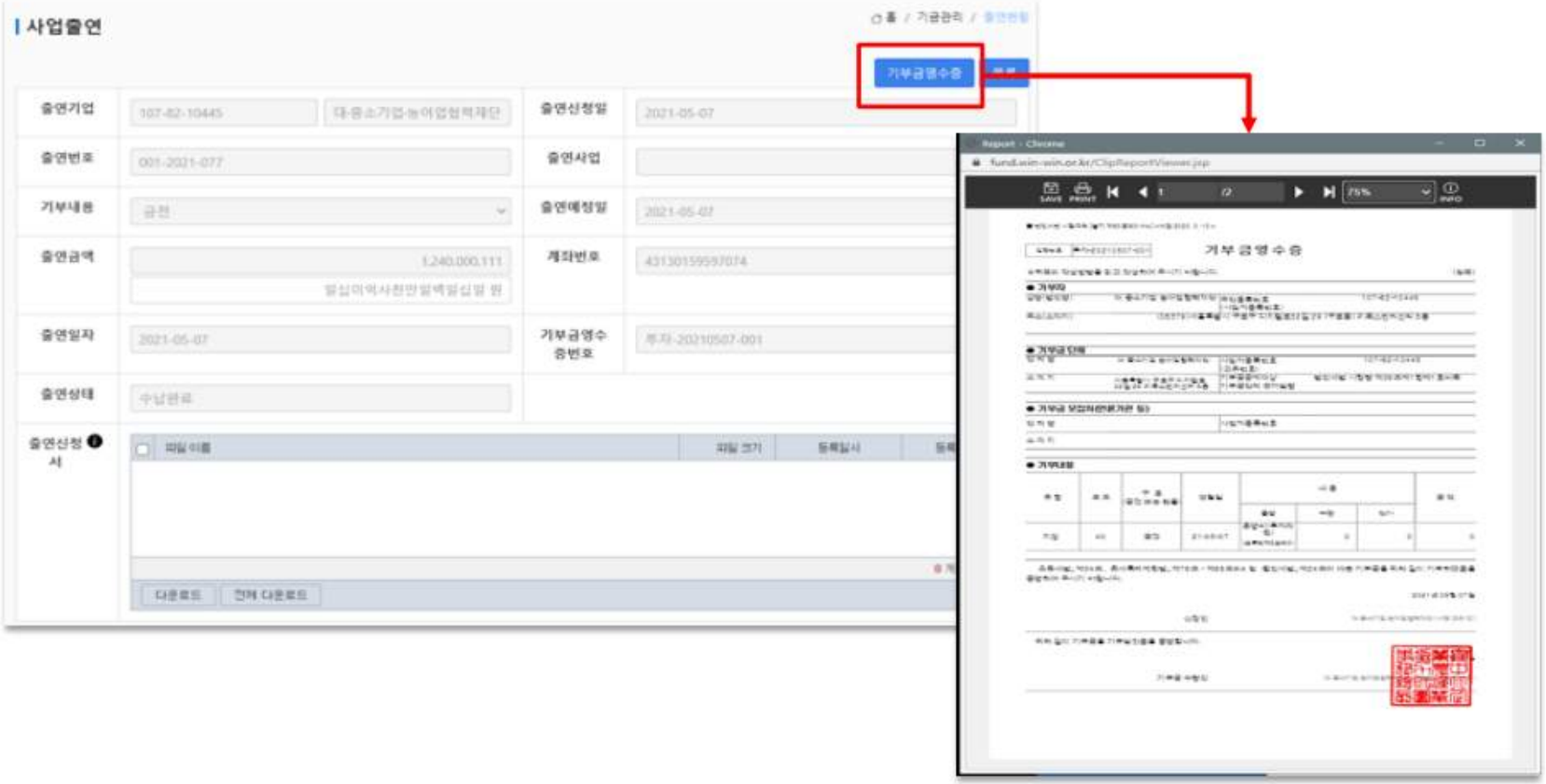

※ 상생협력기금 기부금영수증 출력방법 (2/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기금관리>출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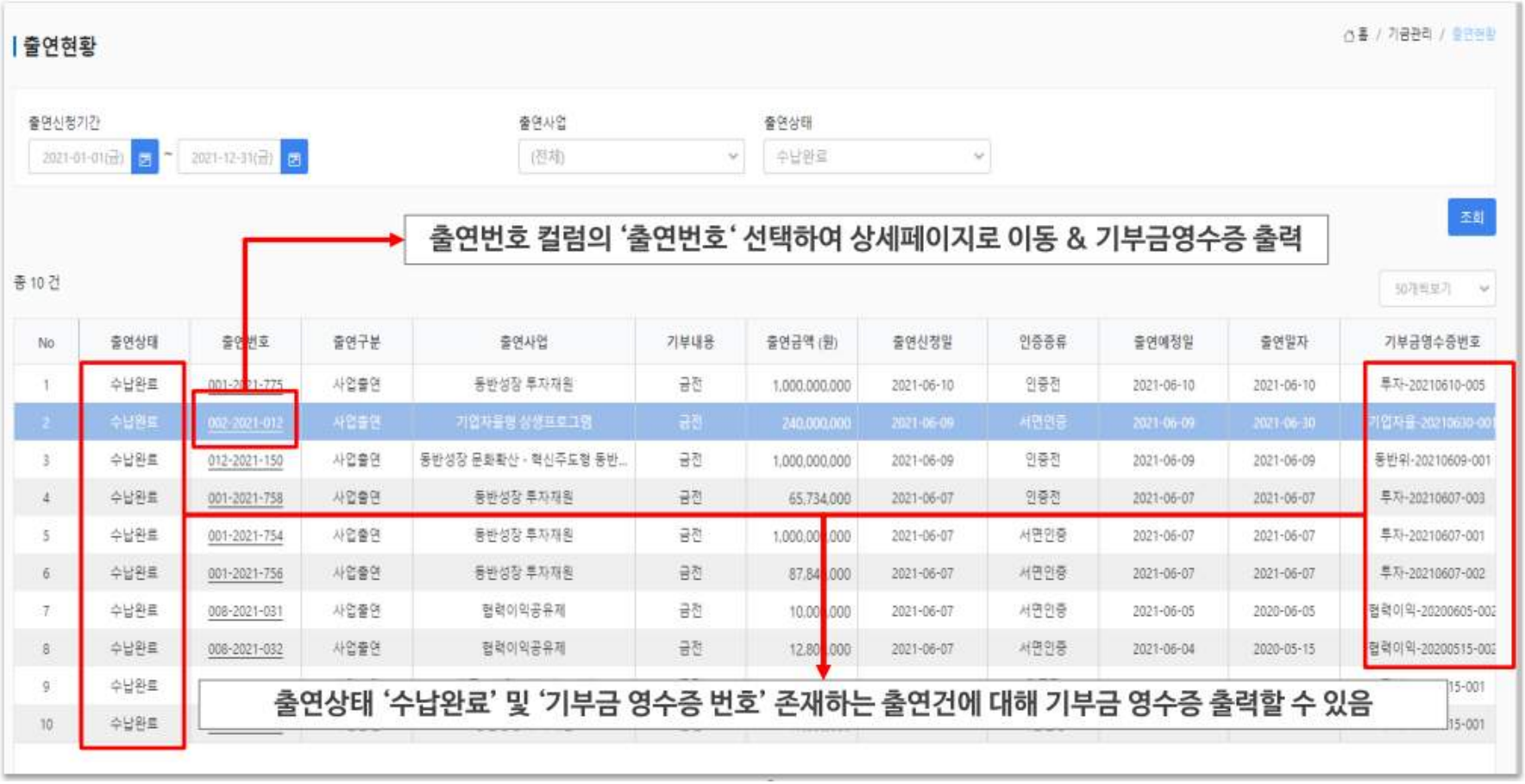

No	출연상태	출연번호	출연구분	출연사업	기부내용	출연금액 (원)	출연신청일	인증종류	출연예정일	출연일자	기부금영수증번호
1	수납완료	001-2021-775	사업출연	동반성장 투자재원	금전	1,000,000,000	2021-06-10	인증전	2021-06-10	2021-06-10	투자-20210610-005
2	수납완료	002-2021-012	사업출연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금전	240,000,000	2021-06-09	서면인증	2021-06-09	2021-06-30	기업자율-20210630-00
3	수납완료	012-2021-150	사업출연	동반성장 문화확산 · 혁신주도형 동반...	금전	1,000,000,000	2021-06-09	인증전	2021-06-09	2021-06-09	동반위-20210609-001
4	수납완료	001-2021-758	사업출연	동반성장 투자재원	금전	65,734,000	2021-06-07	인증전	2021-06-07	2021-06-07	투자-20210607-003
5	수납완료	001-2021-754	사업출연	동반성장 투자재원	금전	1,000,00[illegible]000	2021-06-07	서면인증	2021-06-07	2021-06-07	투자-20210607-001
6	수납완료	001-2021-756	사업출연	동반성장 투자재원	금전	87,84[illegible]000	2021-06-07	서면인증	2021-06-07	2021-06-07	투자-20210607-002
7	수납완료	008-2021-031	사업출연	협력이익공유제	금전	10,00[illegible]000	2021-06-07	서면인증	2021-06-05	2020-06-05	협력이익-20200605-002
8	수납완료	008-2021-032	사업출연	협력이익공유제	금전	12,80[illegible]000	2021-06-07	서면인증	2021-06-04	2020-05-15	협력이익-20200515-002
9	수납완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15-001
10	수납완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15-001

3. 상생협력기금 활용절차 (1/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1	02	03	04	05
사전계약 (등록기업↔협력기업)	**과제등록** (등록기업→추진본부)	**과제수행** (등록기업 · 협력기업)	**재무적 성과 공유** (등록기업→협력기업)	**과제확인** (등록기업→추진본부)

과제 등록 승인

과제수행 및 재무적 성과(이익) 공유 시
중소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 가능

① 공동노력

과제를 수행중인 단계에서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때
(분할지급, 일시지급)

② 재무적 성과(이익) 공유

목표를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일시지급)

Check

성과공유 방식 중
물량·매출 확대에 대해서는 기금 집행 불가

3. 상생협력기금 활용절차 (2/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과제수행 시

Point

기금의 지급은 '정산 후 실비 지급'이 원칙이나, 공동노력의 경우 전체 지급예정 금액 중 80% 이내에서 선지급 가능

표준계약서- 공동노력에 명시 필요	과제수행 시 협력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판촉행사비, 컨설팅비, 특허인증비 등의 비용**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

재무적 성과 공유 시

표준계약서- 성과(협력이익)공유에 명시 필요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지급

Check

① 과제기간 이내에 사용한 금액(과제수행)을 정산한 경우와

② 과제기간 이내에 목표달성한 경우(재무적 성과 공유)에만 기금 지급 가능

4. 상생협력기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Step1

[등록기업]

상생협력기금 전용계좌 잔액확인

지원대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잔액확인은 협력재단에 요청

Step2

[등록기업]

지급요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지급요청 게시판에 신청

성과공유제-[https://benis.or.kr]
협력이익공유제-[https://winplus.or.kr]

Step3

[협력재단]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Step4

[협력재단]

서류검토 완료 시 지급

* 평균 1~2주 소요

Point

☑ **지급이 시급한 경우, 협력재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

5. 상생협력기금 지급요청 시 제출서류 (성과공유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상생협력기금>지급요청

ben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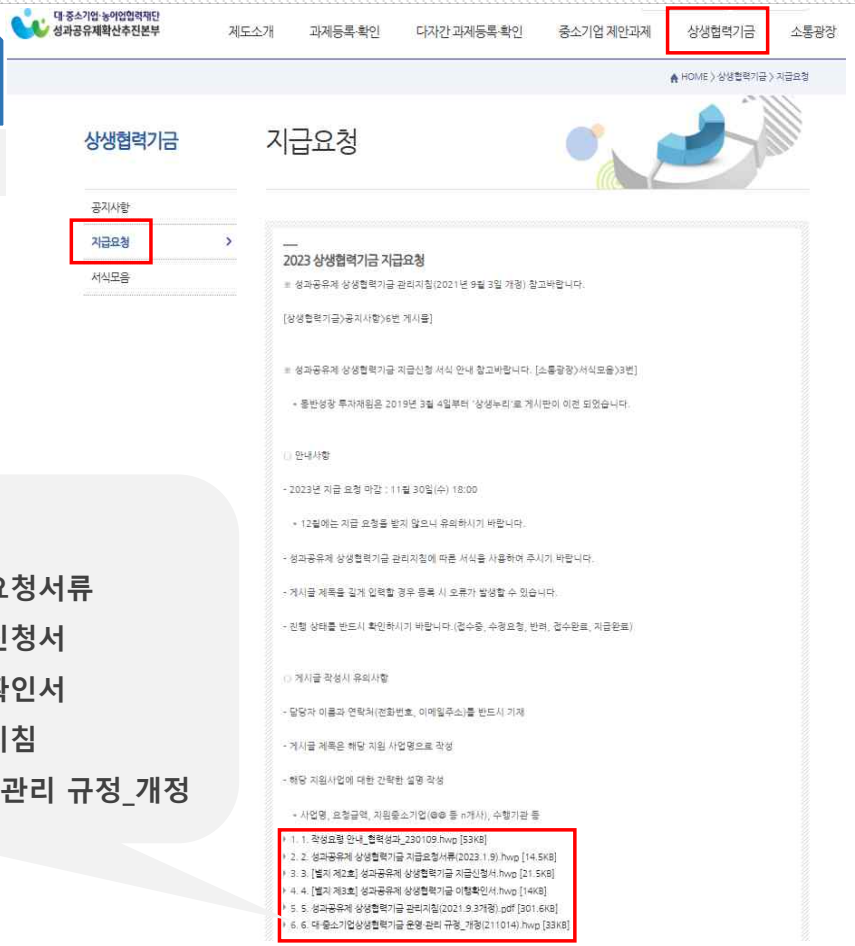

1. 작성요령 안내
2.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요청서류
3.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4.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5.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운영 관리 규정_개정

지급유형		제출서류	
공동노력	일괄지급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4. 회계정산보고서 5. 중소기업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분할지급(예시)	1차(처음회차)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중소기업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
		2차(중간회차)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단, 지급계좌가 처음회차와 다른 경우 통장사본 추가제출)
		3차(마지막회차)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4. 회계정산보고서
		분할지급시 1차·3차서류는 필수 3차이상일 경우, 중간회차는 "지급신청서"만 제출	
성과공유	투자비용보상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4. 회계정산보고서 5. 중소기업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인센티브(현금보상)	1.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2. 결과보고서(최종보고서) 3. 성과검증서류(목표달성증빙 서류) 4. 중소기업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	

5. 상생협력기금 지급요청 시 제출서류 (협력이익공유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상생협력기금>지급요청

winplu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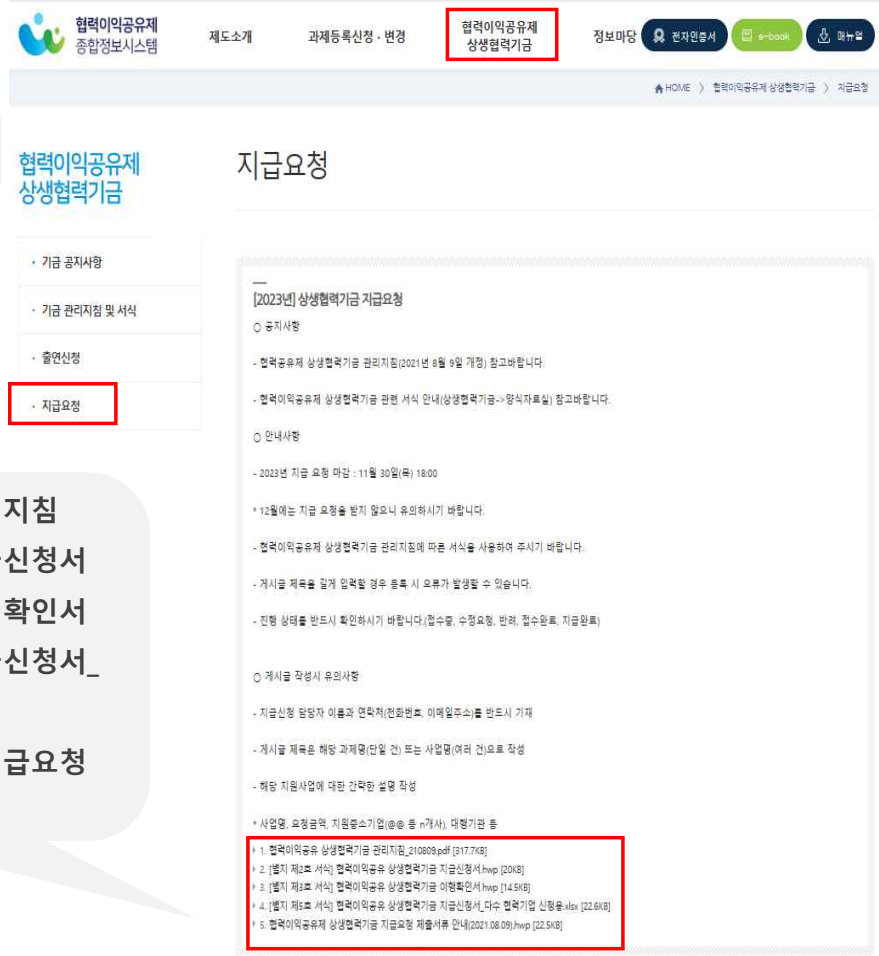

1.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2.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
3.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 이행확인서
4.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 지급신청서_ 다수 협력기업 신청용
5. 협력이익공유제 상생협력기금 지급요청 제출서류 안내

지급유형			제출서류
공동노력 (제10조제2항제1호)	일괄 지급		1. 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2. 기금 이행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비용에 대한 회계정산보고서(정산서류) 4. 중소기업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
	분할 지급 (예시)	처음 회차 (선지급)	1. 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2. 중소기업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
		중간 회차 (선지급)	1. 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최종 회차 (최종정산)	1. 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2. 비용에 대한 회계정산보고서(정산서류) 3. 기금 이행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선지급은 전체 지급예상액 중 최대 80%까지 지급 가능 * 분할지급 시 중간 회차는 "지급신청서"만 제출 * 지급계좌가 이전 회차와 다른 경우 통장사본 추가제출
			* 총 집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회계정산보고서 대신 제출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서류 검토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협력기업이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부가세'는 제외하고 지급
협력이익공유 (제10조제2항제2호)	현금 인센티브, 수수료 환급 등		1. 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2. 과제목표달성 증빙서류 (표준계약서에 명시한 목표의 달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중소기업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5. 통장사본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발급)의 경우,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급신청 때 유효해야 함			
대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경우			* 대행기관은 '관세·부가세'는 포함하여 지급 * 대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기 절차와 모두 동일하게 따르되, 협력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신 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ex) 대행기관 유형 및 지급사유 예시 ① 등록기업의 위임을 받아 협력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 ② 협력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을 포인트를 발급한 업체(중소기업유통센터) ③ 협력기업의 기술에 대해 특허인증을 처리하는 특허법인 ④ 협력기업의 과제수행에 대한 회계정산을 대행하는 회계법인 등

6. 대행기관을 통한 상생협력기금 활용

등록기업 — 대행기관 — 협력기업

- 컨설팅 대행업체
- 특허법인
- 중소기업유통센터
- 회계법인

* 대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기 절차와 모두 동일하게 따르되, 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추가제출
* 대행기관은 '관세·부가세'는 포함하여 지급
* 지급 신청서에 대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유 명시

ex) 대행기관 유형 및 지급사유 예시
① 등록기업의 위임을 받아 협력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
② 협력기업에 대해 동반성장몰 포인트를 발급한 업체
③ 협력기업의 기술에 대해 특허인증을 처리하는 특허법인
④ 협력기업의 과제수행에 대한 회계정산을 대행하는 회계법인 등

7. 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주의사항

1.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급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부가세는 공제(환급)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이중공제(환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3. 상생협력기금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자 (본인 포함)
'용역비, 구매대금'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타 사업(ex. 투자재원)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상생협력기금은 각 사업별 용도에 따른 기금 출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에 출연하였어도, 성과공유제 과제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성과공유제로 신규 출연을 하거나 기금 사업간 전용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과제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A

과제 기간 이내에 해당 과제에 대해 사용한 금액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제기간 내 기금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제기간 종료 전 과제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차이점(기금)은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A 공유 대상에서 차이점(현금성, 물량매출)이 있습니다

참여주체	공동노력 및 공유대상	공유대상
협력이익공유제 =모든 협력관계 성과공유제 =위・수탁관계	**협력이익공유제** *판매를 통한 수익증가 등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 발생* **성과공유제** *원가절감, 성능개선 등 수탁기업의 성과 발생*	협력이익공유제 ✓ 현금성 - 수수료 감면 - 온누리 상품권 - 동반성장몰 포인트 성과공유제 ✓ 현금 ✓ 물량매출확대 - 계약물품구매 - 수의계약